

대구지방법원 2023. 12. 14 선고 2023가단145490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12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11,336,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7. 1.부터 2023. 10. 23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‘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(다만, ‘채권자’는 ‘원고’라 하고, ‘채무자’

는 ‘피고’라 한다)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천종호

별지